

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반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 공시송달 공고

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중 수령한 수당이 부당이득금으로 결정되어 이의 반환을 위한 행정처분 통보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.

2026. 9. 11.

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 평택지청장



1. 건 명: 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금 반환 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(이○호)
2. 근 거: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지침, 행정절차법 제14조
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연 번	성명 (생년월일)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내용			송달불능 사유	주소
			예정된 처분의 제목	처분사유	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	
1	이○호 (1964.12.19.)	국민취업지원제도 부당이득 반환결정에 따른 행정처분 통보(이○호)	지급된 수당의 반환	취업활동계획 수립 당일인 2026.04.30.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여 신규 창업한 사실 확인	○ 1회차,2회차,3회차 구직촉진수당 반환 결정 ○ 금액: 총 1,800,000원	폐문부재	경기도 오산시 가수1로 13 (이하 생략)

4. 공고기간: 2026.9.11.~2026.9.28.(18일간)
5. 기타사항은 경기도지방고용노동청평택지청 오산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현선(Tel.031-8024-9834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